

투 자 설 명 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회사의 존속기한은 영속형이나, 사업기간 상 2034년 중 해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해산할 수 없거나 저가 매각으로 인한 투자위험
이 있습니다.

1.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전 화) : 02-787-0000
대 표 이 사 : (주)코람코자산신탁

2. 발 행 가 액 : 총 금 삼백억원 (₩ 30,000,000,000)

3.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총 150,000주 (액면가 5,000원, 주당발행가 200,000원)

4. 납 입 기 일 : 2025년 11월 05일

5. 자산관리회사명 및 주소

- 자산관리회사 : (주)코람코자산신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6. 납 입 장 소 : 국민은행 아라역종합금융센터

7.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삼성동, 아이콘삼성)

신한편드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현대차증권빌딩 18~20층)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부 모집의 개요

I. 모집의 요령

1. 사모주식의 내용

(단위: 원)

구 분	종 류	모집주식수	주당발행가액	발행총액	비 고
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주	200,000	30,000,000,000	-

2. 사모의 방법

(단위: 원)

사모대상	주수(%)	주당발행가액	발행총액	비 고
사모유상증자 (보통주식)	150,000주 (100.0%)	200,000	30,000,000,000	-
합 계	150,000주	-	30,000,000,000	-

3.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사모의 조건

항 목	내 용
사 모 주 식 의 수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주
주 당 발 행 가 액	200,000원
청 약 단 위	청약자의 1인당 최소 청약한도는 10주
청 약 기 일	2025년 11월 05일
청 약 증 거 금	사모가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5년 11월 05일
배 당 기 산 일 (결 산 일)	- 매년 11월 1일 (4월30일) / 매년 5월 1일 (10월 31일)

5. 사모의 절차

가.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공모예외)

나. 청약방법

1)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2)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가능하며, 최저 청약한도는 10주입니다.

4)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주)코람코자산신탁 내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사모로 진행되므로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하여는 납입절차가 완료된 후 개별 통보합니다. 단, 당해 회사는 청약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주권 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 확인서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모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인인 주주가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주금납입장소 및 납입일

1) 납입장소 : 국민은행 아라역종합금융센터

2) 주금납입일 : 2025년 11월 05일

II.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중요한 사항

가. 당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관련 증권을 취득하고, 투자·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동산 시장 등의 기초변수가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에 대해, 정부 기관이나 감독원, 판매회사 등이 목적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업인가(등록)를 득한 이후, 신주사모가 완료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이 준비완료 되었음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당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2) 부동산 관련 증권의 매입, 운용, 처분 관련 위험

3)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4) 회사 경영 및 운영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 제도

변화관련 위험, 현금 및 증권의 운용관련 위험)

제 2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황

상 호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문명: KORAMCO OFFICE PREFERRED REIT]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존속기한	영속
주요업무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 8.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설립방식	발기 설립, 국토교통부 등록 후 증자(사모)
자 본 금	86.3억원 (본건 유상증자 전)
처분원칙	당해 회사 청산시 시장 매각 추진
업무위탁	1) 자산관리회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2) 자산보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한펀드파트너스
상장여부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사업목적

-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람코 우선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증권(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배당 및 매각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 코람코 우선주는 부동산 관련 증권 거래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발행 시장 활성화하고자 함. 거시적으로 투자다변화 전략차원의 플랫폼 구축하고 상업용 부동산(CRE) 세컨더리 시장 창출 및 Rule Setting에 선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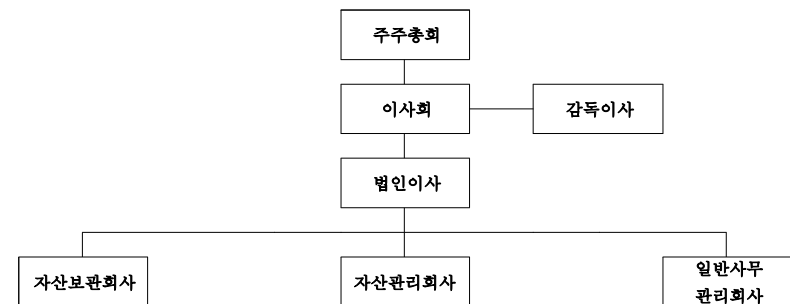
3. 회사의 구조

가. 코람코 우선주는 실체 없는 명목회사이나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및 법인이사를 두고 그 역할과 권한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나. 본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14조의5 2항에 따른 의사결정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게 됨.

이사회는 법인이사인 자산관리회사와 및 감독이사 2명으로 구성됨.

[당해 회사의 지배구조]



4. 주식에 관한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가액
100,000,000주	기명식 보통주 150,000주	기명식 보통주 200,000원

5.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산일	6개월 단위 (5/1 ~ 10/31, 11/1 ~ 4/30)	정기주주총회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결산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공고게재 신문	서울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명의개서 대리인	신한펀드파트너스

6. 정관에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정관 제55조 아래와 같이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II.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1.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위	성명	현소속	비고
법인이사	(주)코람코자산신탁	(주)코람코자산신탁	
감독이사	도병운	법무법인 세한	
감독이사	이성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 가. 법인이사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 나. 감독이사의 보수는 월 일백만원 이하로 한다.

Ⅲ.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가.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국내 실물 오피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펀드에서 발행한 부동산 관련 증권에 대해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임.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가.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블라인드 형태로써 개별 투자대상자산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투자기본계약 내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향후 개별 투자(Capital Call 방식)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회사의 기존 투자자산

펀드/리츠명	자산명	투자대상
KB와이즈22호	삼성SDS타워	1종 수익증권
하나오피스리츠	하나금융강남사옥	1,2종 종류주
에이치엘제3호	센터플레이스	1종 종류주
코레이트리츠	코레이트타워	1종 종류주
LB일반사모60호	크리스탈스퀘어	1종 수익증권
타이거일반사모318호	스케일타워	1종 수익증권

다. 회사의 투자 예정자산

펀드/리츠명	자산명	투자대상	투자금액(억원)	예상배당률
홍국코어리츠	홍국생명빌딩	1종 종류주	300	6.5%

○ 홍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개요

리츠명	홍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리츠 인가일	2025년 9월 29일
투자대상	홍국생명빌딩(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자산관리회사	홍국리츠운용(주)
자산보관회사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사무수탁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리츠운용기간	7년
배당지급시기	매 6개월 단위(6월/12월)

3. 투자와 관련된 위험

가. 부동산 관련 증권에 대한 재간접 투자 · 운용

1) 당사는 실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증권(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할 예정

2) 피투자자산의 매입 · 운용 ·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재간접 구조임. 따라서 부동산 시장 현황, 금리, 임대차, GP의 운용 성향에 따라 본 블라인드의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3) 당사는 투자 대상 상시 모니터링 및 Deal Pipeline을 구축하고 자산분석 프로세스(권역분석 → 자산 안정성 분석 → 수익성 분석 → 종합평가)의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최선의 투자대상을 획득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이후 투자 대상별 예상되는 이슈 사항 점검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운용사와 협업할 예정.

4) 처분사유가 명확한 자산에 대해서는 주주동의를 얻어 처분목표 가격과 처분기간을 설정하고 주식양수도를 추진하되 그 자산관리회사의 직접 매도 또는 외부위탁 중 적합한 방법을 주주에게 제안하고 처분실행 하고자 함.

4. 이익 등의 배당방법

가. 배당가능이익

1)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매기 당기순이익 전액을 현금 배당할 계획임.

2) 회사의 존속기한 동안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규정됨.

나. 배당 정책

1)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 배당할 계획임

다.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1) 사업연도는 6개월 단위로 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및 매년 11월 1일부터 04월 30일까지로 할 계획임.

2)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배당금 승인을 한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임.

제3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코람코오피스우선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 분	위탁 업무	담당회사	위탁보수
자산 관리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주)코람코 자산신탁	[운용보수] 투자기간 : 출자약정총액의 연 0.30% 투자기간 종료후 청산등기시까지 : 투자잔액의 연 0.30%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매매		[성과보수] 투자자IRR 10% 초과 : 목표수익률 IRR 10%를 초과 달성한 경우, 투자자 초과 회수 예정 금액의 15%
자산 보관	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주)코람코 자산신탁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연 15백만원 (자산관리 위탁보수에 포함)
일반 사무	현금의 보관 및 관리	엔에이치 투자증권 주식회사	
	해산(청산)관련 업무		
일반 사무	발행주식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신한펀드 파트너스	연 22백만원 (자산관리 위탁보수에 포함)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운영 및 계산에 관한 사무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		
	통지 및 공고 업무		
	해산 및 청산 업무		
일반 사무	국토교통부 보고 업무	신한펀드 파트너스	

I.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그 자산의 투자·운용의 자문 및 평가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자산관리회사의 개요

- 가. 명칭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영문 : Koramco REITs Management & TRUST Co., Ltd.)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2024년 03월 31일 기준)

순번	주주명	주식수(주)	비 율(%)
1	(주)엘에프	2,156,047	67.08
2	키움증권(주)	372,655	11.59
3	(주)우리은행	268,982	8.37
4	한국산업은행	257,893	8.02
5	(주)신한은행	154,350	4.80
6	기타	4,415	0.14
합계		3,214,342	100.00%

2. 자산관리위탁계약 개요

- 가.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사 청산 등기일까지
나. 위탁보수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매입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운용수수료	[투자약정기간 내] ^{주1)} 약정총액의 연 0.30% [투자약정기간 이후] ^{주2)} 연평균 투자잔액 ^{주3)} 의 연 0.30%	매 회계연도말 이후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운용성과수수료	[투자자IRR ^{주4)} 10% 초과] : 목표수익률 IRR 10%를 초과 달성한 경우, 투자자 초과 회수 예정금액의 15.0%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처분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매각성과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1) 출자약정기간이 종료한날 내지 투자집행 누적액 2/3이상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2) 투자약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회사의 청산등기일까지
주3) 매일의 투자잔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주4) 투자자 납입금의 현재가치가 투자자 회수금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

다. 주요 업무

- 1) 자산(부동산관련 증권, 현금 등)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관리 등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차입계획의 작성 및 제공
- 2) 부동산관련 증권 등의 매매
 - 가) 부동산관련 증권의 인수, 취득을 통한 출자 및 처분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나) 위탁자의 부동산관련 증권의 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서 협상, 작성 및 체결
 - 다) 위탁자를 위하여 부동산관련 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
- 3) 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가) 사무수탁회사의 매분기,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자료 제공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공시 의무(매분기, 결산기의 투자보고서 작성 및 공시업무를 포함함)
 - 다) 증권 발행시의 주간사 등의 선정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
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가(등록)의 신청,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 라)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 업무와 관련한 청산업무의 수행
 - 마) 관련 수탁회사, 자산실사(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기관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 바) 기타 위 업무들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서상 위탁받은 업무

II.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 가. 명칭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나.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
-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2025년 06월 30일 기준)

주요주주	소유주식수(주)		구성비(%)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농협금융지주	188,452,535	-	58.15	-
기타	135,633,770	18,870,968	41.85	100.00
계	324,086,305	18,870,968	100.00	100.00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가. 주요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사 청산 등기일까지
- 위탁보수 : 연 1,500만원(VAT별도)

나. 주요 업무

- 1) 증권의 보관 및 관리
 - 가) 증권의 인수, 인도 및 보관. 단, 자본시장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 등록하여야 하며, 예탁 또는 전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자체 보관하는 경우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증권상 인정되는 원리금 수령, 유무상 청약 등 제반권리의 행사
 -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 2)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가)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 나)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지급
 - 다)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관련 수탁기관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
 - 라)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계좌개설, 폐지 및 변경 업무
 - 마)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시 현금(대출금 포함)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 바)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해산(청산)관련 업무

- 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에 따른 회사명의 자산의 보관업무 및 관련 실무 사무
- 나) 위 가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Ⅲ.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 가. 명칭 : 신한펀드파트너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현대차증권빌딩 18 ~ 20층)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2024년 12월 31일 기준)

순번	주주명	주식수(주)	비율(%)
1	신한금융지주회사	469,370	99.79
2	기타	988	0.21
합계		470,358	100.00%

2. 일반사무위탁계약의 개요

- 가. 주요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사 청산 등기일까지
○ 위탁보수 : 연간 2,200만원(VAT별도)

나. 주요 업무

-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업무
7) 해산 및 청산 업무
8)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고 업무
9) 위 각 호의 부수업무

제4부 기타 필요한 사항

○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강화

투자자에게 당 회사의 주식 판매 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하여 투자자의 이해를 돕도록 함

○ 공시 및 보고 의무 준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여금 당 회사 관련 주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기에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함

또한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영업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당 회사의 경영현황을 공개하고, 보고서를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비치토록 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토록 함

○ 기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함